

2022. 4. 13.(수) 10:00

**제29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4월 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2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550백만원
 -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의 향유를 위하여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연 대상	○ 기 관 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김 문 오 ○ 일반현황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출연 사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550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rowspan="2" style="width: 10%;">구 분</th><th rowspan="2" style="width: 10%;">사업 기간</th><th rowspan="2" style="width: 10%;">2022년 당초 예산액</th><th rowspan="2" style="width: 10%;">2022년 제1회 추경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 <tr> <th style="width: 10%;">계</th><th style="width: 10%;">국비</th><th style="width: 10%;">시비</th><th style="width: 10%;">군비</th><th style="width: 10%;">기타</th></tr> <tr> <td>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td><td>1월~ 12월</td><td style="text-align: center;">0</td><td style="text-align: center;">550</td><td style="text-align: center;">550</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550</td><td></td></tr>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2년 당초 예산액	2022년 제1회 추경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1월~ 12월	0	550	550			550	
구 분	사업 기간	2022년 당초 예산액	2022년 제1회 추경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1월~ 12월	0	550	550			550																									
출연 필요 성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부서 의견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21. 3. 15. ~ 6. 12.)
 - 2021년(2020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1.40점)

평가분야	평가배점(%)	평가점수	비고
지속가능경영	30	28.16	• 리더십 지표 • 전략 지표 • 운영 적절성 지표 • 인사·조직 지표 • 재무관리 지표 • 예산관리 지표
경영성과	40	37.00	• 사업지표 • 사업성과 적절성 지표 • 고객만족 지표
사회적가치	30	26.24	• 일자리 확대 지표 • 사회적 책임 지표
총 점	100	91.40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2년도 출연금 550백만원 교부로 재단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문화도시 예비사업 550백만원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 예산액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관 요구액 (A)	부서 검토액 (B)	증감 (B-A)	1회추경 예산액
자체사업비	0	550	550	-	550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0	550	550	0	55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문화재단				전화번호	053.659.4271	
					홈페이지	www.dsart.or.kr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연혁	2011.05.17. 등기						
임원 (21.3.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문오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조향래	매일신문사 문화사업국장			2021.12.1~2022.08.19	
	비상임이사	김철식	달성군청 참꽃갤러리 관장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도원길	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 군감사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이치우	한국예총대구연합회 부회장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김정화	계명문화대학교 부교수(생활음악)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전유진	달성군학부모협회 회장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한대곤	전. 대구문화재단 이사			2021.3.26.~2022.8.22	
	비상임이사	방호현	달성군 정책관광국장			재임기간	
	감사	도창곤	한경회계법인 전무이사			2020.8.23.~2022.8.22	
	감사	박은주	달성군 문화체육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최근3년간 예산현황 (백만원)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무현황 2021.12.31 기준	자산	9,586백만원
	예산액	4,866	6,692	7,020		부채	1,623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3,698	5,508	4,849		자본	7,963백만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II. 검토의견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재)달성문화재단의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추경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원, 문화도시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5천만원, 달성군의 문화적 자산인 나루터를 도시브랜드로 추진할 사업비 2억 5천만원 등이며
- 자발적인 지역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다시 도전하기 위한 사업비로 출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 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코로나-19 확산세 대응 방역강화 및 피해극복지원, 주요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과 사업비 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예산을 반영함

3. 주요내용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880,200	816,000	64,200
일 반 회 계		878,600	814,900	63,700
특 별 회 계		1,600	1,100	500
	의료급여기금	949	694	255
	기반시설	0	50	△50
	치수사업	651	356	295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80,200	816,000	64,200	7.87
일반회계	계	878,600	814,900	63,700	7.82
	지방세수입	198,695	198,695	0	0
	세외수입	40,604	38,098	2,506	6.58
	경상적세외수입	24,774	24,467	307	1.26
	임시적세외수입	9,998	7,845	2,153	27.4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832	5,786	46	0.79
	지방교부세	188,745	169,347	19,398	11.45
	조정교부금등	46,529	35,198	11,331	32.19
	보조금	384,941	366,930	18,011	4.91
	국고보조금등	252,927	240,745	12,182	5.06
	시·도비보조금등	132,014	126,185	5,829	4.62
	지방채	1,150	1,15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936	5,483	12,453	227.10
특별회계	계	1,600	1,100	500	45.45
	세외수입	190	36	154	422.33
	경상적세외수입	2	5	△3	△61.62
	임시적세외수입	188	31	157	509.98
	보조금	706	604	102	16.88
	국고보조금등	565	483	82	16.88
	시·도비보조금등	141	121	20	16.8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3	459	244	53.13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80,200	816,000	64,200	7.87
일반회계	계	878,600	814,900	63,700	7.82
	일반공공행정	44,987	43,938	1,049	2.39
	공공질서및안전	6,162	5,335	827	15.51
	교육	13,096	13,053	43	0.33
	문화및관광	46,003	30,011	15,992	53.29
	환경	27,047	27,926	△879	△3.15
	사회복지	357,954	341,912	16,042	4.69
	보건	29,700	29,026	674	2.32
	농림해양수산	59,179	52,858	6,321	11.96
	산업·중소기업	3,663	3,049	614	20.15
	교통및물류	102,726	86,790	15,936	18.36
	국토및지역개발	76,956	64,307	12,649	19.67
	예비비	8,856	18,384	△9,828	△51.83
	기타	102,268	98,309	3,959	4.03
특별회계	계	1,600	1,100	500	45.45
	사회복지	598	500	98	19.60
	국토및지역개발	355	162	193	119.63
	기타	647	438	209	47.62

■ 조 직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80,200	816,000	64,200	7.87
일 반 회 계	계	878,600	814,900	63,700	7.82
	본청	790,304	727,735	62,569	8.60
	기획예산실	28,765	37,966	△9,201	△24.24
	법무감사실	391	381	10	2.62
	자치행정국	76,758	76,021	737	0.97
	자치행정과	63,478	63,463	15	0.02
	세무과	753	638	115	17.99
	징수과	620	560	59	10.57
	회계과	4,461	3,928	533	13.57
	종합민원과	645	636	9	1.38
	정보통신과	6,800	6,794	6	0.09
	경제환경국	87,757	80,942	6,815	8.42
	일자리경제과	10,125	8,712	1,413	16.22
	환경과	3,767	3,593	174	4.84
	농업정책과	18,768	15,230	3,538	23.23
	청소위생과	25,171	26,264	△1,093	△4.16
	공원녹지과	29,926	27,142	2,783	10.25
	주민복지국	377,295	359,644	17,651	4.91
	복지정책과	212,400	212,548	△148	△0.07
	생활보장과	47,232	47,173	58	0.12
	희망지원과	88,170	70,622	17,549	24.85
	교통과	29,493	29,301	192	0.66
	건설도시국	150,602	121,322	29,280	24.13
	건설과	73,714	57,888	15,826	27.34
	안전방재과	22,759	19,283	3,476	18.03
	도시과	27,806	19,181	8,625	44.97
	도시정비과	22,978	21,631	1,347	6.23
	건축과	1,503	1,479	25	1.66
	토지정보과	1,842	1,860	△18	△1.00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일 반 회 계		정책관광국	68,737	51,460	17,277	33.57
		정책사업과	23,872	10,882	12,990	119.37
		문화체육과	15,827	13,531	2,297	16.97
		관광과	8,766	6,949	1,817	26.14
		교육청소년과	20,272	20,098	174	0.87
	직속기관		49,341	48,325	1,016	2.10
		보건소	35,549	34,737	812	2.34
		보건과	18,064	17,345	719	4.14
		건강증진과	17,485	17,392	93	0.54
		농업기술센터	13,792	13,588	204	1.50
	의회		2,222	2,358	△137	△5.79
		의회사무국	2,222	2,358	△137	△5.79
	읍면동		36,733	36,481	252	0.69
		화원읍	5,989	5,902	87	1.47
		논공읍	4,382	4,372	10	0.22
		다사읍	6,139	6,124	15	0.24
		유가읍	3,986	3,949	36	0.92
		옥포읍	3,873	3,858	15	0.39
		현풍읍	3,795	3,783	12	0.33
		가창면	2,810	2,767	43	1.56
		하빈면	2,586	2,565	21	0.82
		구지면	3,174	3,161	13	0.42
특 별 회 계	계		1,600	1,100	500	45.45
	본청		1,600	1,100	500	45.45
		생활보장과	949	694	255	36.75
		안전방재과	651	356	395	82.88
		도시과	0	50	△50	순감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80,200	816,000	64,200	7.87
일 반 회 계	계	878,600	814,900	63,700	7.82
	인건비	91,089	89,234	1,855	2.08
	물건비	42,923	41,163	1,760	4.27
	경상이전	483,813	466,720	17,093	3.66
	자본지출	246,147	197,515	48,632	24.62
	시설비및부대비	244,024	176,612	47,412	26.85
	민간자본이전	11,945	11,498	447	3.8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826	4,826	0	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266	1,222	44	3.64
	자산취득비	4,044	3,315	729	21.98
	기타자본이전	42	42	0	0
	내부거래	1,882	1,882	0	0
	예비비및기타	1,2747	18,386	△5,639	△60.67
	예비비	8,856	18,384	△9,528	△51.83
	반환금기타	3,891	2	3,889	190341.90
특 별 회 계	계	1,600	1,100	500	45.45
	인건비	392	340	52	15.15
	물건비	41	37	4	11.11
	경상이전	590	488	102	20.91
	자본지출	91	141	△50	△35.39
	예비비및기타	486	94	392	419.65
	예비비	243	4	239	6832.20
	반환금기타	243	90	153	170.23

4)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기획예산실	군정슬로건(민선8기) 교체	0	70	70	
기획예산실	시내버스 광고료	0	600	60	
회계과	공용차량 보험료	0	163	163	
회계과	논공읍 행정복지센터 청사내진보강공사 ('21년 특교세 3억)	0	326	326	
일자리경제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1차) (예산성립전 사용)	0	132	132	보조
일자리경제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2차) (예산성립전 사용)	0	287	287	보조
일자리경제과	달성첨단산업벨트 혁신인재지원사업	309	379	70	보조
일자리경제과	미래4차산업 특수용접 전문가 양성사업	0	65	65	보조
일자리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이래에이치티1호)	0	77	77	보조
일자리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이래에이치티2호)	0	75	75	보조
일자리경제과	달성 혁신성장 포럼	0	80	80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상금	2,405	5,759	3,354	보조
농업정책과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0	81	81	
농업정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0	134	134	보조
청소위생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행 수수료	3,151	2,557	△594	
청소위생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민간처리)	2,424	2,133	△291	
청소위생과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수수료	1,722	1,530	△192	
공원녹지과	매곡리 시설녹지 정비사업	0	700	700	
공원녹지과	세천리 공공공지 정원 조성	0	700	700	
공원녹지과	도성암 임도 보수	0	300	300	
공원녹지과	산불장비(등짐펌프 등)	18	72	54	
공원녹지과	산불진화 안전장비(진화화, 진화복)	18	72	54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공원녹지과	피해고사목 방제	71	360	289	보조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감리비)	120	171	51	보조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산림대책(시설비)	0	533	533	보조
복지정책과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0	599	599	보조
복지정책과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지원	200	300	100	
복지정책과	시설관리공단(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경상전출금	0	155	155	
복지정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1,954	2,199	245	보조
복지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494	34,989	495	보조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국비사업)	139	271	132	보조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급식품질 개선 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0	655	655	보조
복지정책과	담임교사지원비	2,744	3,359	614	보조
복지정책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423	1,638	215	보조
복지정책과	기초연금 지급	82,562	78,710	△3,851	보조
복지정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607	2,551	△56	보조
복지정책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	2,728	2,648	△79	보조
복지정책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	1,664	1,164	△499	보조
복지정책과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502	7,095	△406	보조
복지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374	16,093	△280	보조
복지정책과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2,603	2,237	△366	보조
복지정책과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38	106	△132	보조
희망지원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731	13,923	13,191	보조
희망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583	873	290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13,307	13,925	617	보조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희망지원과	아동수당지원	23,527	24,696	1,168	보조
희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290	2,496	206	보조
희망지원과	아동급식(조식식)지원	422	506	84	보조
희망지원과	아동급식(방학중 중식)지원	430	490	59	보조
희망지원과	아동급식(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419	504	84	보조
희망지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85	458	272	보조
희망지원과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169	230	61	보조
희망지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리모델링	0	100	100	
희망지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주택 매입	0	519	519	보조
희망지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기자재 구입	0	50	50	
교통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환사업)	0	180	180	보조
건설과	화원 구라리(산5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	2,500	1,000	
건설과	화원 설화2리 달성유통센터뒤편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0	90	90	
건설과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0	800	800	
건설과	논공 상리 7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0	300	
건설과	논공 금포리 대진섬유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0	150	
건설과	달성군청~옥포강림임대주택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350	150	
건설과	다사 세천리(688-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	450	50	
건설과	다사 서재리 39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 획도로 개설	500	550	50	
건설과	다사 세천리 276번지 외 2개소 도시계획 도로 개설	2,300	2,400	100	
건설과	다사 매곡리 다사초등학교 주변 도시계 획도로 개설공사	0	150	150	
건설과	유가 유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	800	200	
건설과	옥포 기세리 969-6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500	3,300	2,80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건설과	옥포 본리1리 금성사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40	440	400	
건설과	옥포 강림2리 528-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10	310	
건설과	옥포 송해공원~기세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0	500	
건설과	옥포 간경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옥포 본리2리 245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140	1,140	
건설과	옥포 간경리 73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옥포 간경리 757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10	110	
건설과	옥포 신당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70	570	
건설과	옥포 교항1리(교항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가창 우록리(본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230	1,424	194	
건설과	가창 대일리(67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300	250	
건설과	가창 냉천리(83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98	98	
건설과	가창 대일리(점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가창 삼산리(44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18	118	
건설과	하빈 대평1리(하빈로179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430	530	100	
건설과	현풍 대리 이양서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658	958	300	
건설과	현풍 대1리 955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280	180	
건설과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0	800	800	
건설과	현풍 상리 350-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50	350	
건설과	현풍 성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0	150	
건설과	현풍 성하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70	170	100	
건설과	구지 응암리 12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80	80	
건설과	도시관리계획 신설 및 변경	100	300	20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건설과	논공 하리 7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0	150	
건설과	화원 대구교도소 앞~화원교 지중화사업	0	1,081	1,081	
건설과	논공 금포리 863-1번지 일원 도로정비	0	500	500	
건설과	논공 남리 636-2번지 일원 마을안길 도로정비	0	100	100	
건설과	논공 금포리 917-2번지선(대진섬유) 도로확장	0	220	220	
건설과	유가 쌍계리 휴양림길 인도설치	0	210	210	
건설과	유가 한정리 596-53번지 일원 도로확장	500	850	350	
건설과	현풍 부리 511-9번지 일원 도로확장	105	365	260	
건설과	가창 우록리 1321번지선 외 1개소 도로정비	0	200	200	
건설과	논공 위천리 71-1번지 일원 도로개설	0	100	100	
건설과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100	200	100	
건설과	다사 대실역청아람 주변 인도정비공사	200	320	120	
건설과	화원 설화교차로~신일해피트리 인도정비	0	270	270	보조
건설과	논공 금포리 720번지 일원 도로정비	0	200	200	
건설과	다사 세천리(279-6번지선)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580	330	△250	
안전방재과	코로나19 재택치료키트 배송 (예산성립전 사용)	0	70	70	특별 교부세
안전방재과	다사 대실역 주변 클린로드 설치사업 (‘21년도 특교금 430,214천원)	400	830	430	
안전방재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	0	90	90	보조
안전방재과	다사 세천 저류지 정비공사	0	200	200	
안전방재과	지방하천정비(현풍천 재해예방사업) (전환사업)	3,491	3,551	60	보조
안전방재과	소규모 하천 환경정비	993	1,193	200	
안전방재과	옥포 강림리 553-1번지선 강림소하천 정비 (전환사업)	0	900	900	
안전방재과	가창 상원리 220번지 상원소하천 정비공사 (2021년 특별교부세)(예산성립전 사용)	0	100	100	특별 교부세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안전방재과	가창 상원리 606번지선 상원소하천 정비공사	99	329	230	
안전방재과	구지 화산리 313번지선 창리소하천 정비공사	30	170	140	
안전방재과	논공 하리 524번지선 하리소하천 정비공사	30	120	90	
안전방재과	가창 단산리 538번지선 단산소하천 정비공사	30	630	600	
안전방재과	옥포 기세리 572번지선 기세소하천 정비공사	0	80	80	
안전방재과	가창 삼산리 317번지선 범골소하천 정비공사	0	110	110	
도시과	현풍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등	3,211	11,111	7,900	
도시과	多함께 사는 우리가 남2家	0	129	129	보조
도시과	달성군 선비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0	149	149	
도시과	유가 달빛 특화거리 조성사업	0	300	300	보조
도시정비과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300	450	150	
도시정비과	가창 옥분리(386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200	200	
도시정비과	옥포 김흥리(690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200	530	330	
도시정비과	가창 상원리(542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150	150	
도시정비과	하빈 기곡2리(산116번지선) 농로정비	20	100	80	
도시정비과	옥포 본리리(2292번지선)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0	80	80	
도시정비과	하빈 하산2리(한서실업 뒤) 농로개설공사	0	80	80	
도시정비과	논공 하동지 방수로 정비공사	0	150	150	
도시정비과	하빈 봉촌1리(382-4번지선) 암반관정 설치공사	100	150	50	
도시정비과	구지 오설리(121-1번지선) 양수시설 설치공사	200	150	△50	
정책사업과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0	5,000	5,000	
정책사업과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감리비)	0	900	900	
정책사업과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건립 공사비	0	6,488	6,488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정책사업과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건립(감리비)	0	508	508	
문화체육과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0	550	550	
문화체육과	읍면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	150	235	85	
문화체육과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공사	300	400	100	
문화체육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가창 옥분리 주차장)	0	370	370	
문화체육과	옥포 김흥 동네체육시설(게이트볼장) 정비	0	50	50	
문화체육과	유가(한정) 2공구 파크골프장 조성	0	250	250	
문화체육과	관내 파크골프장 휴먼지털이기 교체 및 설치	0	100	100	
문화체육과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집행잔액 (반환금)	0	1,000	1,000	
문화체육과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80	0	△80	
문화체육과	비슬산 참꽃 문화제	250	0	△250	
관광과	도동서원 주차장 조성	0	1,500	1,500	
관광과	남지장사 극락보전 보수	0	170	170	보조
관광과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	290	385	95	보조
보건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0	68	68	보조
보건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시설비	80	0	△80	보조
농촌지도과	노지채소 토양개선 농자재 지원	0	100	100	
의회사무국	인건비(정책지원관2명 - 임기제(7급))	0	90	90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60억원 보다 642억원(증 7.87%)이 증가된 8,802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149억원 보다 637억원이 증액된 8,786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원 보다 5억원이 증액된 16억원입니다.

□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억원, 지방교부세 194억원, 조정 교부금 113억원, 국시비보조금 180억원, 전년도 이월금 1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회수금 및 국시비보조금 2억5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된 행사 경비와 낙찰차액, 내부유보금 등 90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 당면 현안사업 및 필수지원경비로 현풍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 79억원,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59억원,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건립 7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정비사업 53건 156억원, 하천 및 농로정비사업 13건 32억원, 주차장 조성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임원격리자 생활지원 등 보건·복지분야 184억원, 공익직불금 등 농업·임야분야 42억원, 교통·산업·도시 분야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부당이득금회수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2억5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160억원보다 642억원 증액된 8,802억원으로,
- 세입부문에서는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과 2021년도 이월금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확산세 대응 방역강화 및 피해극복 지원과 주요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기타특별회계 예탁금원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기금의 예수금원금상환 계획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통합계정 지출 변경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지 출 변경 계획	지출 총계	6,883,102	6,883,102	0
	· 통합계정 예치금	6,274,178	6,518,999	△244,821
	· 예수금원리금 상환	608,924	364,103	244,821
	- 치수사업 특별회계	608,924	314,103	294,821
	- 기반시설 특별회계	0	50,000	△50,000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검토의견

○ 2022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기타특별회계 예탁금원금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기금의 예수금원금상환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 통합계정의 예수금원금상환 지출계획이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6억원으로 변경되고, 예치금 지출계획이 2억 4천만원이 감액되어 62억 7천만원이 되어,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68억 8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기금 운영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22일

2. 제 출 자 : 신동윤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5.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본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으로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협동조합 : 해당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

- 근거: 헌법제123조, 중소기업기본법(제1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주요내용

-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제3조, 제4조에 군수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제5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사업 실시
-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경영지원, 판로촉진 및 사업지원, 포상 등
- 제10조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사업(구매, 생산, 판매 등)을 통해 경제이익 극대화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1961년)과 함께 단체수의계약 제도 도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2007년) 이후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제3차(2022~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 전국에 총 51개 지자체에서 동 조례를 제정·시행(2022.2.10일 기준)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북구’ 만 제정 (2021. 4.30.) 되었고 달서구와 수성구는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관할 구역내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2022. 3월)

조 합 명	위 치	전 체 조합회원사	관내 소재 조합회원사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다사읍세천로3길 7	444	56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제품 KOMICO 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1 조합소개			
조합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3길 7		
전화	053-581-8210	Fax	053-581-8214
이사장	최 우 각	전무이사	장 흥 길
조합설립일	1962.03.26	조합원수	444개 사
홈페이지	http://www.tamico.or.kr	E-mail	tamico30@hanmail.net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한 기계제조업종 및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붙임 1) 기초지자체별 조례제정 현황 1부.
 2) 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기초지자체별 조례제정 현황 (2022. 2.10.일 기준)

연 번	기 초 지 자 체	조 례 제 정		입법예고	협 의 중
1	서울	노원구, 마포구, 금천구, 구로구, 용산구, 강동구	6	강서구	중구,종로구,영등포구, 동대문구
2	부산 울산	(부산)동구,중구,연제구, 강서구,사하구	5	해운대구	부산(사상구),울산(북구)
3	대구 경북	(대구)북구 (경북)포항,고령,경산	4	—	중구,서구,달서구,동구, 안동
4	광주 전남	(전남)여수,목포,나주	3	순천	서구,북구
5	대전 세종 충남	(대전)서구,동구,중구, 유성구 (충남)천안,예산	6	—	공주
6	인천	서구	1	미추홀구 중구	부평구
7	경기	시흥,안산,부천,성남,군포, 수원,이천	7	—	김포,광명,광주
8	강원	—		—	강릉,춘천,영월
9	충북	충주,청주,제천,진천	4	—	—
10	전북	전주,군산,남원,정읍,부안, 익산	6	—	완주
11	경남	창원,진주	2	거제	—
12	경기 북부	포천,고양,파주,남양주, 동두천,구리,가평	7	의정부	양주,연천
13	제주	—	—	—	—
합계		51		7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군수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지원) 군수는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민간위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①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 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12.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업종의 분류) ①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 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를 수 있다.

③법 제13조 제1항에서 “관련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생산, 가공 또는 수리공정에 관련된 업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4월 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에 따라 규제개혁의 적극성 제고
-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존규제의 재검토 등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근거 조문 신설
(안 제2조의2)

5.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기존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2조의 2에 기존규제의 재검토 등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근거 조문 신설하였음
-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심사가 필요한 경우,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제 심사 가능
- 소관부서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 검토의견

- 불합리한 규제정비로 지역주민·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존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제목			
지 자 체		연번	
소관부서	국 장	(직책/성명/연락처)	
	과 장	(직책/성명/연락처)	
	담 당	(직책/성명/연락처)	
건의단체		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	(조례/규칙/시행규칙 명)		
당 초 검토결과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 검 토 결 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추진일정			

[별지 제4호 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조례/규칙/고시(○○군 훈령-00호) 등		
지 자 체		연번	
소관부서	국 장	(직책/성명/연락처)	
	과 장	(직책/성명/연락처)	
	담 당	(직책/성명/연락처)	
제·개정	제정일 :		
	최근개정일 :		
검토개요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준치 필요성> ○		
추진일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u> <u>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u> <u>1. 기존규제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u> <u>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u> <u>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의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④ <u>기존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u> <u>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u> <u>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존</u> <u>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u> <u>있다.</u>
--	---

□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 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4월 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9조)
- 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2조)

5.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등 공동으로 불법촬영 근절대책 발표(2018. 6.15.)
 - ※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2019. 2. 28.)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제정이유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
-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신고 체계의 마련 등을 규정
-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검토의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후, 관련 기관·단체, 경찰서 등과의 협력체제로 불법촬영기기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실질적인 홍보활동 추진 등,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1. 7.20.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21일부터 군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는 안심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조례로 정해야 함.

- 붙임 1)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 1부.
 2) 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점검·단속

■ 관내 공중화장실

(단위: 개소)

구분	계	공 원	관광지	버 스 터미널	시장 상가	휴게소	지하 철역	체육 시설	공공 기관	주유소	기타
계	300	30	37	1	7	4	5	20	53	64	79
공공	222	30	37	0	4	0	5	20	53	0	73
민간	78	0	0	1	3	4	0	0	0	64	6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총괄 담당부서: 환경과)

- 점검기간 : 명절(설·추석), 행락철
- 점검주체
 - 환경과(주관부서) : 중점관리대상 공중화장실(40개소) 등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관광지, 체육시설 내 공중화장실
 - 공원녹지과 : 공원 내 공중화장실
 - 일자리경제과 : 시장·상가, 주유소 내 공중화장실
 - 청소위생과 : 위생업소 내 공중화장실
 - 읍·면 : 공공기관 내 공중화장실
- 점검요령 : 현장 확인점검
- 점검사항
 - 공중화장실 안전장치(비상벨)
 - 세면대, 문고리, 여성화장실 비상벨,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등 시설물 정상작동 여부
 - 대변기칸 휴지통 없애기 준수상태(2018. 1. 1.부터 시행)

■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단속 (총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점검기간
 - 특별관리대상(역, 터미널 등 인구밀집지역 공중화장실) : 주 1회
 - 일반관리대상(특별관리대상 이외) : 월 1~2회
 - 민간화장실은 점검 요청 시 신속한 점검 지원
- 점검방법 : 2인 1조(노인일자리사업), 탐지기 이용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보유 : 36대(전파탐지기 18개, 렌즈탐지형 18개)
- 관련예산 (2022년도)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유지보수 : 1,800천원
 - 시니어클럽 : 45명 배치
 - 노인일자리 공익형사업 인건비(불법감시카메라 점검) : 141,750천원 / 년(국·시·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등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등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군민 등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직접 설치·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을 군민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 등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관리인은 군민 등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시행하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해당 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에게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4월 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사업대상지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대중교통 및 투어버스를 통한 도동서원 접근성 향상으로 관내 다른 관광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동서원 관광객의 행복택시 이용자격을 제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농촌지역”을 “자연부락”에 한정 (안 제2조)
- 도동서원 관광객 이용자격 제외 (안 제4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대중교통 및 투어버스를 통한 도동서원 접근성 향상으로 사업 대상지(행복택시 등의 운행과 지원 지역)를 재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조제1호 중 “농촌지역” 을 “자연부락” 으로 한정
- 제4조제3호 이용자격에 “도동서원 관광객” 삭제
- 제5조 제2항에는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이 이용하는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 직장, 학교 등과 인접버스정류장 사이로 한다” 로 변경함으로써 제4조제3호(이용자격:도동서원 관광객)에 따른 운행구간을 삭제함
- 제6조 제2항에는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도동서원 소재지” 를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로 이용권 발급신청 대상마을을 변경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적, 지역적 변화에 따른 지역내 다른 관광지와 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니만큼 방문객들이 대구시 어느 장소에서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편리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환승의 번거로움, 버스 운행 횟수 제한(1일 2회), 장거리 버스타승의 불편함 등)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촌지역”을 “자연부락”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이 이용하는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 직장, 학교 등과 인접버스정류장 사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도동서원 소재지를”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시내버스 미운행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u>농촌지역</u>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 2. ~ 6. (생략)	제2조(정의) ----- -----. 1. ----- ----- <u>자연부락</u>----- -----. 2. ~ 6. (현행과 같음)
제4조(이용자격)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 ~ 2. (생략) 3. <u>도동서원 관광객</u>	제4조(이용자격)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제5조(운행방법) ① (생략)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이 이용하는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u>해당 직장, 학교 등과 인접버스정류장 사이로</u> 하고, 제4조제3호에 따른 관광객이 이용하는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u>도동서원과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사이로</u> 한다. ③ ~ ⑥ (생략)	제5조(운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해당 직장, 학교 등과 인접버스정류장 사이로 한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조(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 ① (생략) ② 제3조에 따른 <u>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u>을 및 <u>도동서원 소재지를</u> 관할하는 읍·면장은 매월 10일까지 다음 달 해당 지역에 필요한 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군수는 이용자수, 이용거리 및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적정한 매수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20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교부하며 읍·면장은 이를 25일까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관할 읍·면장이 직접 지급한다. ③ ~ ⑤ (생략)	제6조(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u>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u>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이하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이하생략>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4월 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지원지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 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군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4.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5.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 및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 사업주,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 세목별 감면내역
 - 가. 재산세
 - 코로나19 방역지원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25% 감면
 -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이 방역을 위한 임시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면제

-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1백만원 이내)

나. 주민세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 및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법인 사업주 기본세율 50% 감면

6. 감면 추계액 : 3.9억원

(단위: 억 원)

구 분	계	주 민 세				재 산 세	비고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법인)	종업원분	재산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3.7	2.7	1.0				
지원 의료기관	0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0.2					0.2	

II. 검토의견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코로나19 확산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에 따라 시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및 코로나 19 방역 지원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납세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군세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 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⑧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 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 1. 15.>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 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5만 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10만 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 원

4) 그 밖의 법인: 5만 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생략)

② 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담배소매인
2. 삭제
3. 삭제
4. 연탄·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